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UCC와 저작권의 합동연횡—

지난달 세계적 포털업체인 구글이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16억5,000만달러에 인수했다. 또 다른 포털업체인 야후는 인터넷 사진 공유 사이트 플리커를 품에 안았고 국내의 SK커뮤니케이션즈는 엠파스를 M&A 했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포털업체들의 몸집 불리기가 끝이 보이질 않는다. 그런데 이들의 합종연횡을 꼼꼼히 살펴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멀티미디어와 UCC(User Created Content)가 M&A의 키워드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비단 인터넷 포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UCC가 분명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동인임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그러나 소리바다로 대표되는 불법음원 공유에서도 나타나듯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UCC는 독버섯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동영상 포털의 95%가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에서는 유니버설이 신생 UCC 기업인 그루퍼닷컴과 볼트닷컴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청구했고, 국내에서도 동영상판 소리바다 사태가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는 포털업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자로부터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고, 권리자 역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저작권도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 저작권은 '공유'와 '개방'을 통하여 더욱 독창적인 저작물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로 재탄생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저작물의 대가를 인정해야 가능하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도, 창작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리눅스월드 컨퍼런스에서 로렌스 레시 교수가 현 저작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고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CCL 운동은 창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는 일종의 규약을 만들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저작권법과 달리 CCL은 창작자와 수용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오픈 소스가 있다면 디지털콘텐츠에는 CCL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CCL은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의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 CCL은 양자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진 못하지만 타협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CCL은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All the copyrights reserved' 대신에 'Some copyrights offerable'로 구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RMC(Ready Made Content)에도 CCL 제도를 채택한다면 저작권의 상업적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이다. 일례로 캐나다의 Free Jack 사이트는 만화와 관련된 많은 플래시 파일과 장면들을 CCL을 이용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 플래시와 만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CCL은 웹 공간을 진정한 의미의 웹으로 만들어 주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자본의 논리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디지털콘텐츠의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조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편집장 이창한